

보도시점 2026. 3. 12.(목) 06:00 (목요일 석간) 배포 2026. 3. 11.(수)

전기차 화재 피해 공백 메운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공모

- 전기차 주차·충전 중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
- 사고일 기준 최초 등록일 10년 이내 차량 대상...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 분담

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보험사업자 공모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가 새롭게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1차년도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대상 및 보장 한도 등 보험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으며, 보험사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총보험료 최대 60억 원 이내에서 우수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제안하도록 했다.

이후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해 보험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업자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품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보상은 보험상품 확정 및 판매 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침에서 제시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의 최소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등록된 전기자동차 중 사고일로부터 최초 차량등록일까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다.

이중 차량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차량에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되,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장 상황을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로 정했으며,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 원 이상이며, 연차별 총 보상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제조물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했다.

보험 의무 참여대상은 2026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다. 해당 제작사와 수입사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보험료는 보험상품 확정 이후 각 제작·수입사별로 올해 2분기 내에 안내 예정

2026년 7월 1일 이후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전기차 화재사고는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조성전 (044-201-6892)



□ 추진 배경

- 전기차 화재사고는 사고 원인 규명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기존 보험 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적 장치 필요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26~2028년
- (사업방식) 기후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해 보험사가 운영하며, 기후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26년 20억원 지원
- (지원대상)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한 제작·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등록한 전기차 중, 사고일로부터 최초 차량등록일까지 만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기차
- (보장상황) 주차, 충전 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손해 비용 등
- (보장한도) 사고당 100억원 이상, 연차별 총 보상한도 300억원 이상
 - ※ 기존 타 보험(제조물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은 각 보험의 담보 범위에 따라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
- (지원범위) 사고일로부터 등록일이 만 10년 이내인 전기차 사고에 대해 보상하되, 사고일로부터 만 1년 내 등록된 전기차 사고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 확대 보상
 - ※ 단, 1차년도 사업은 '26.1.1일부터 보험개시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도 1차년도 보험기간 동안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 향후 계획

-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험사업자 평가 및 선정
 - ※ 공모과정에서 보험사업자가 총보험료 수준은 낮추고 보장 대상 범위는 확대하는 등 지침상 최소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평가 과정에서 우대 가능
- 전기차 제작사·수입사 보험료 납부 및 보험 운영